

2017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쇼 공동개발 협정서

'서울디자인재단'과 '_____ '은 최근 패션산업의 양면성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성에서 나아가 지속 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를 제기하고자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쇼 공동개발에 상호 협력한다.

제 1조 (목적)

본 협정은 「2017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쇼」 개발에 '서울디자인재단'과 '_____ '은 상호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 2조 (공동개발 개요)

- 가. 사업명 : 2017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쇼
- 나. 사업목적 : 지속가능(윤리적) 패션 사업을 공동 이슈화
- 다. 협약기간 : 약정체결일로부터 2017.10.30.일까지
 - ※지속가능패션쇼는 7017서울역 고가공원 개장일, 새활용플라자 개장일에 개최되며, 협정기업은 개발된 지속가능 패션쇼 샘플제공
- 라. 공동개발 주요 협정
 - . 참여기업 : 패션쇼를 위해 디자인개발
 - . 서울권 지역 봉제업체에게 샘플제작 의뢰 진행
 - . 재단 : 패션쇼 개최를 위해 디자인 개발된 작품에 한해 샘플제작비 지원

제 3조 (약정 기간)

본 약정의 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17.10.30일까지이다

제 4조 (협정 내용)

- 가. '서울디자인재단'과 '_____ '은 협정서를 체결한 후 지속가능 패션쇼 공동개발을 위해 '_____ '은 10착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.
- 나. '서울디자인재단'은 '_____ '에게 협정서를 체결한 후 '_____ '이 요청하는 샘플제작비 10착 당 최대 500만원을 샘플제작 계획에 근거해 마항의 계좌로 50% 입금한다.
 - ※ 동대문패션시장과 샘플제작은 선금 지급이 관례화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50% 선 지급 적용
- 다. 나머지 50%금액은 '_____ '가 '서울디자인재단'에게 샘플제작 영수증을 실비 정산해서 제출한 근거로 재단이 마항의 계좌로 입금한다.
- 라. 샘플제작비는 지속가능 패션쇼 개최를 위한 상품제작비로 사용한다.
- 마. 계좌번호 : _____ / 예금주 : _____

제 5조 (협정 조건)

- 가. '_____ '은 '서울디자인재단'의 협정에 대한 보상으로 지속가능패션쇼 상품을 제작한다.
- 나. '서울디자인재단'은 지속가능 패션쇼 개최 시 협력사로 명시한다.
- 다. '서울디자인재단'과 '_____ '은 지속가능패션쇼를 행사와 연계해 개최한다.

제 6조 (정책변경)

'서울디자인재단'과 '_____ '은 정책 변경으로 패션쇼 변경이 예상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후 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 7조 (권리의 귀속)

- 가. 이 패션쇼는 '서울디자인재단'과 '_____ '의 공동개발로 '서울디자인재단'은 프로그램의 주관사, '_____ '은 협력사로 노출되며, 서로 협력해 패션쇼를 개최한다.
- 나. 특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내용은 '서울디자인재단'과 '_____ '이 공동으로 협의해 사용한다.

제 8조 (협정서 해지)

- 가. '서울디자인재단' 또는 '_____ '이 약정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각기 서면 통보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나. 법령의 변경,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, 행정기관의 처분 등으로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다.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9조 (기타)

본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률, 기타 상관례에 따른다.

2017년 4월 일



서울디자인재단
대표이사 이 근
(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종로 6가)

로고 삽입

회사명
단체장
(주소)